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2. 4. 16.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4월 3일
○ 회부일자 : 2002년 4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2. 4. 12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관 김 경 용)

가. 제안이유

○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 수를 대폭 낮추는 등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감사청구 주민 수 조정

-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을

⇒ "20세 이상 주민 300명"으로 함(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방안 및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민단체가 제출한 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 동 조례의 개정에 검토 반영토록 하였는바, 이의 반영 여부와

감사청구 주민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세의 기간계산 시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 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감사청구가 활성화되도록 감사 청구인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 주요골자

○ 감사청구 주민수 조정

-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 (안 제2조 제1항)

7.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을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①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 ----------**20세 이상 주민 100명** ---------- ---
②제1항의 감사정구 주민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삭제)**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第13條의4 (住民의 監査請求) 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이상의 住民은 20歲이상의 住民 總數의 50分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20歲이상의 住民數이상의 連署로 市·道에 있어서는 主務部長官에게,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에게 당해地方自治團體와 그 長의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監査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監査請求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搜査 또는 裁判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機關에서 監査하였거나 監査중인 사항. 다만, 다른 機關에서 監査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監査에서 漏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자치부 활성화방안 권고(안)] *행정자치부 감사 16800-31(2002. 1.23)

住民 自治參與 機會擴大를 위한
住民監査請求制 活性化 方案

1. 住民監査請求人 數 緩和 勸告

○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감사 청구인수 등 여건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조례 개정 권고

-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문제점 야기

○ 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 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인원수"로 정하도록 권고

⇒ 광역자치단체 :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 200명내외

※ 국민 감사 청구인수는 300명으로 시행령 제정

2. 政府合同監査 등을 통한 運營實態 持續點檢·指導

○ 정부합동감사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동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유도

3. 住民監査請求制度의 弘報 强化

○ 자치단체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요령 등 게재

○ 일간신문, 관보, 지역신문, 시·도정 홍보지, 반상회보, 공익광고 전광판 등을 이용한 반복적 홍보전개

○ 시민봉사실 등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홍보물 비치 및 활용방법 등 안내상담

- 자치단체별 상담요원 지정운영 및 교육실시

4. 透明하고 嚴正한 監査班 編成運營

○ 감사시 시민단체 추천인, 시민감사관, 옴브즈만 등을 감사반에 참여시켜 **감사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 업무성격별로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전문성 구축**

○ 감사결과 공포시 청구인, 지역주민, 의회의원, 시민단체 등에게 감사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로 **신뢰성 제고**

5. 行政事項

○ 시·군에서는 본 활성화 방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강구

○ 조례개정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매월말 추진실적을 통보

○ 아울러, 정부합동감사 및 우리도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예정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2. 4. 12.
제 안 자 : 김준석 위원외

1. 수정이유

주민들이 자치행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감사청구가 활성화되도록 감사 청구인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 감사청구 주민수 조정

-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수정 (안 제2조 제1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중 "20세 이상 주민 300명"을 "20세 이상 주민 100명"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20세 이상 주민 100명** ----------